

<붙임 4> 장애인, 국가보훈(취업지원대상자) 지원자격

장애인, 국가보훈(취업지원대상자) 지원자격

구 분	관련근거	증빙서류
장애인	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	장애인 증명서
국가보훈(취업지원대상자)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 29조 등	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

※ 대상자는 입사지원시 해당사항 입력해야 인정, 증빙서류는 면접전형시 제출